

머 리 말

兒童福祉에 있어서의 첫째 목표는 모든 어린이가 태어난 가정을 基盤으로 하여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어린이의 權利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떤 어린이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나지 못하여 施設에 保護되거나, 또는 다른 가정으로 入養되기도 한다.

韓國戰爭의 과정에서 발생되어진 戰爭孤兒와 混血兒에 대한 對策의 一環으로 시작된 현대적 의미의 入養 制度는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入養 對象 兒童의 대부분을 國內의 가정으로 入養시키지 못하고, 外國의 가정에 依存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國際社會에서 ‘孤兒輸出國’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1993년말 현재까지 모두 179,673명의 어린이가 入養되었는데, 이들 중에서 129,907명(72.3퍼센트)이 外國의 家庭으로 入養되었고, 國內의 家庭으로 入養된 경우는 全體 入養兒의 27.7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있다.

‘孤兒輸出國’이라는 불명예는 우리나라를 ‘國家가 國際社會에서 認定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최소한의 體面과 義務 … 를 지키지 못(해) … 냉정한 國際社會에서 빈축을 사는 나라로 전락’시키고 있다. 따라서 入養事業과 관련하여 改善되어질 政策課題로는 國內入養의 活性化, 家庭委託保護制度의 擴充, 入養對象兒童 共同管理制度의 導入 등을 들 수 있다.

이 報告書에서는 國內入養 活性化의 方案을 모색하고자 하였는데, 주로 入養 特例法의 改正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國外入養의 法的 根據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入養特例法은 國內入養 活性化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國內入養 中心의 法體系를 구축하는 것은 入養과 관련된 政府의 政策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政策課題일 것이다. 研究陣의 노력으로 入養特例法의 改正試案이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政策討論會가 1994년 6월 10일에 開催되었다. 討論의 결과를 바탕으로 改正試案은 다시 다듬어 졌으며, 마침내 12월의 定期 國會에서 ‘入養 促進 및 節次에 관한 特例法’으로 개정되어, 금년 1월 5일에 公布되었다.

國內入養의 活性化, 家庭委託保護制度의 擴充, 入養對象兒童 共同管理制度의

導入 등에 대한 研究가 앞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入養特例法의 改正을 위하여 노력한 研究陣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入養特例法의 改正 試案을 만드는 동안에 많은 도움을 준 學界, 關聯 機關 및 保健福祉部 당국의 關係者들에게는 研究陣을 대신하여 感謝를 드린다.

끝으로 이 報告書에 실린 모든 內容은 研究者의 意見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4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延 河 清

目 次

I. 入養事業 改善의 背景과 必要性	7
1. 入養事業의 推進 經緯	7
2. 兒童福祉의 原則에서 벗어나는 施設保護 代案	8
3. 入養事業의 政策課題	10
II. 入養의 實態와 問題點	12
1. 要保護兒童의 發生	12
2. 國內入養의 低調	13
가. 入養兒의 發生 原因	13
나. 國內外 入養 實態	15
다. 國內入養이 低調한 原因	17
3. 事後管理의 不在	18
III. 國內入養 活性化를 위한 長短期 對策	20
1. 兒童福祉 서비스로서의 入養	20
가. 入養의 機能	20
나. 入養의 種類	20
2. 入養事業 改善의 基本方向	21
가. 兒童을 위한 入養政策의 樹立	21
나. 現行의 國外入養 禁止 政策에 대한 全面的 檢討	21
다. 問題의 原因에 對應하는 長短期 對策의 樹立	21

3. 入養特例法の改正	23
가. 入養特例法改正推進의 背景	23
나. 現行 入養特例法の 問題點	24
다. 入養特例法改正의 基本 方向	24
라. 入養特例法改正의 主要 內容	25
參考文獻	29
附 錄	31
附錄 1	33
附錄 2	51

表 目 次

〈 表 1 〉 우리나라 入養事業의 推進 經緯	8
〈 表 2 〉 施設保護 現況: 1993年 12月 31日 現在	10
〈 表 3 〉 兒童福祉의 對象 體系	12
〈 表 4 〉 要保護兒童의 發生 및 保護 現況	13
〈 表 5 〉 入養兒의 發生 要因別 分布	14
〈 表 6 〉 入養 實績의 推移	15
〈 表 7 〉 國外入養의 對象 國家別 分布, 1993年	16
〈 表 8 〉 美國의 國際入養 現況: 入養兒童의 出身地域別	16
〈 表 9 〉 入養 事實의 公開 豫定 與否	17
〈 表 10 〉 入養兒의 障礙 與否	17
〈 表 11 〉 國內入養 兒童의 養育費 算出: 1個月分	18
〈 表 12 〉 入養兒의 戶籍 登載 狀態	19
〈 表 13 〉 入養機關別 母國訪問事業 推進 現況: 1982年~1993年	19
〈 表 14 〉 國內入養 活性化를 위한 長短期 對策의 方向	22

I. 入養事業 改善의 背景과 必要性

1. 入養事業의 推進 經緯

- 養子란 血緣的 또는 生物學的 關係가 없는 어린이가 本人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合意에 의하여 養父母의 婚姻 中の 子女로 되는 人爲的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社會에서 받아들여지는 合意의 內容을 養子制度라고 한다.
- 現代적 의미의 入養制度는 爲子 養子制度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제2차 世界대전의 과정에서 생겨난 孤兒, 棄兒, 貧民兒 또는 婚姻 外의 子와 같이 扶助 養育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의 福祉를 위한 社會 政策的 動機로부터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要保護兒童에 대한 社會서비스로서의 入養制度는 傳統的인 養子制度和 뚜렷이 구분된다.
- 우리나라에 있어서 現代的 意味의 入養制度가 도입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이다.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戰爭孤兒와 混血兒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大家族 制度가 核家族 制度로 바뀌어지는 家族制度의 變遷이 現代적 의미의 入養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탁연택, 1972: 18).
- 現代적 의미의 入養制度가 韓國戰爭 동안에 생겨난 戰爭孤兒와 混血兒를 保護하기 위한 政府의 政策으로 도입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入養政策의 방향은 몇 차례의 變化를 보이고 있다. 入養政策의 方向 轉換은 주로 法의 制定이나 改正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表 1> 과 같다.

〈 表 1 〉 우리나라 入養事業의 推進 經緯

시 기	입양정책의 방향	추진 내용
한국전쟁 직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외입양	- 전쟁고아 및 혼혈아에 대한 보호 정책으로 국외입양 추진
1961년	국외입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고아입양특례법 제정(1961) - 입양알선기관 허가(4개소)
1962~1970년	국내입양 활성화	- ‘고아 한사람씩 맡아 기르기’ 운동 전개
1970~1975년	국외입양의 제한	- 북구 유럽 국가들에의 입양 중단 - 보호시설의 정비
1976년	국내입양 부양책	- 입양특례법 제정(1976)
1976~1980년	국외입양의 단계적 축소	- 1985년에 국외입양 전면 중단 계획 - 입양사업 5개년 계획 - 국외입양 쿼터제 도입
1981~1988년	국외입양 전면 개방	- 이민 확대 및 민간 외교 활성화
1989~1994년	국외입양 단계적 축소	- 1996년에 국외입양 전면 중단 계획 - 국내입양 활성화 모색
1994년 8월	국외입양 전면 금지 정책 취소	

資料: 1)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 내부자료, 1989.

2) 정기원·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2. 兒童福祉의 原則에서 벗어나는 施設保護 代案

- 兒童福祉 서비스는 分類의 基準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서비스가 傳達되는 場所에 따라: 在家 서비스와 家庭外 서비스
 - 서비스의 機能에 따라: 支持的 서비스, 補助的 서비스, 그리고 代理的 서비스

- 서비스의 防禦線의 位置에 따라: 本家庭에서의 1차 防禦, 代理家庭에서의 2차 防禦, 그리고 收容施設에서의 3차 防禦
- 兒童福祉에 있어서의 첫째 目標은 모든 어린이가 태어난 家庭을 基盤으로 하여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健全하게 자라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만약 태어난 家庭이 어린이의 基本的인 欲求를 充足시켜 줄 수 없는 危機에 놓이거나, 또는 부모와 자녀간의 役割 關係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家庭의 社會的 機能을 回復, 維持, 그리고 強化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養育 및 保護의 義務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어린이의 태어난 家庭이 社會서비스를 提供받는다 고 하더라도 正常的인 機能을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어린이의 養育에 있어서 基盤이 되고 있는 家庭의 부모가 어린이에 대한 養育 機能을 喪失하거나, 拋棄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代理家庭의 提供이 필요함.
 - 어린이의 基本 欲求를 充足시켜 줄 수 있는 代理家庭의 제공이 不可能한 경우에는 收容施設에 의한 서비스를 提供하여야 함.
- 施設保護의 效果에 대한 評價는 주로 施設保護를 통해 提供된 社會서비스가 어느 만큼 效果的으로 어린이의 問題點을 解決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 施設保護의 影響 評價에 관한 研究에서는 方法論上의 制限으로 연구의 結果에 信賴度와 有效性이 缺如된 경우가 많음.
 - 一般的으로 알려진 施設保護의 問題點으로는,
 - ① 과도하게 固定된 生活,
 - ② 個人的 自由와 創意의 制限,
 - ③ 交友나 社會生活의 制限,
 - ④ 經濟的 經驗에 대한 機會의 制限, 그리고
 - ⑤ 情緒的 欲求의 不充分한 發散
 등이 지적됨.
 - 특히 韓國戰爭의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戰爭孤兒들을 保護하기 위해 出發한 우리나라의 施設保護制度에서는
 - ① 性格形成을 위한 娛樂이나 集團經驗의 缺如,
 - ② 兒童分類의 不適切,

- ③ 教育的 對策, 특히 職業訓練의 不備,
 - ④ 施設認可, 監督, 實際 指導面의 不足,
 - ⑤ 人事, 財政, 監督節次 등의 行政的 未熟,
 - ⑥ 세심한 調査를 통한 入養이나 委託 서비스의 不備,
 - ⑦ 訓練된 職員의 不足, 그리고
 - ⑧ 不充分的 地域社會 資源 活用
- 등의 문제가 많이 나타남(장인협·오정수, 1993: 352).

- 施設保護가 이러한 問題點들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人性的 完全하고 調和로운 發達을 위해 어린이는 家庭 環境과 幸福과 사랑, 그리고 理解의 雰圍氣 안에서 成長해야 하며, …… 國家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어린이가 그가 태어난 원래의 家庭에서 保護를 받을 수 있도록 適切한 措置를 취해야 한다’(國際私法에 관한 헤이그 會議;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1993: 3)는 原則을 고려할 때 國內入養 및 家庭委託保護를 더욱 活性化해야 하며, 入養이나 委託를 통해 다른 家庭에서조차도 養育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家庭的인 環境의 社會서비스를 提供해 주기 위해서는 集團家庭保護制度의 開發도 필요하다.

〈 表 2 〉 施設保護 現況: 1993年 12月 31日 現在

종 류	보 호 대 상	시설수	수용인원
영 아 원	3세 미만	38	2,260
육 아 원	3세 이상 18세 미만	219	16,914
직업보도	12세 이상	8	346
교호시설		7	545
자립지원		6	129
계		278	20,194

資料: 보건사회부, 『아동복지시설 일람표』, 1994.

3. 入養事業의 政策課題

- 國內에서 발생되고 있는 入養對象 兒童을 國內의 家庭에서 入養하지 못하

고, 그들에 대한 入養의 대부분을 外國의 家庭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國際社會에서 ‘孤兒 輸出國’이라는 不名譽를 안게 되었다.

- 韓國戰爭以後 1993年末 現在까지 모두 179,673名의 어린이를 國內 및 國外的 家庭에 入養시켰음.
 - 그 동안에 入養된 어린이들 중에서 129,907名(72.3%)이 外國의 家庭으로 入養되었고, 國內의 家庭으로 入養된 경우는 全體 入養兒의 27.7%에 지나지 않음.
 - 國內入養이 活性化되지 못하고 있는 理由를 血緣中心의 家族制度, 障碍兒童 入養의 忌避, 住居空間의 不足, 家族 利己主義,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認識의 不足 등에서 찾기도 하고(장인협·오정수, 1993: 344),
 - 우리사회 傳統的인 價値觀이 血緣에 의한 家系 承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入養을 申請할 때 入養兒의 血液型, 容貌, 性別, 그리고 年齡 등을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원하고 있다는 데서 찾기도 함(보건사회부, 1991: 330).
- ‘孤兒 輸出國’이라는 不名譽는 우리나라를 ‘國家가 國際社會에서 認定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最小限의 體面과 義務를 지키지 못(해) …… 냉정한 國際社會에서 빈축을 사는 나라로 轉落’시켰다(조선일보, 1990년 11월 27일자).
- 따라서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의 수립과 추진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정책과제가 된다.

II. 入養의 實態와 問題點

1. 要保護兒童의 發生

- 兒童福祉의 對象 體系는 要保護兒童과 一般兒童으로 나뉘어 진다.

< 表 3 > 兒童福祉의 對象 體系

대 상	구 분	내 용
요 보호 아 동	양육환경상의 문제 아동	빈곤가정 아동, 결손가정 아동, 부모부재 아동
	장애 아동	신체장애 아동, 정서장애 아동, 정신장애 아동
	사회적 및 법적 보호를 요하는 아동	가출 아동, 비행 아동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	피학대 아동, 유기 아동, 미혼모의 아동
일반아동	일반 건전 아동	근로 청소년, 농어촌 아동

資料: 장인협·오정수,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p. 127.

- 保健社會部の 兒童福祉 指針에서 分類하는 要保護兒童은 棄兒, 未婚母의 兒童, 迷兒 및 家出兒 등으로, 보건사회부에서는 이들의 發生 豫防과 保護를 위한 福祉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다.
- 要保護兒童의 發生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해마다 5,000명 가량의 要保護兒童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要保護兒童이 발생하는 주된 原因은 未婚母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政策的 對應이 시급히 要求되나,
 - 要保護兒童에 대한 措置는 施設에 收容하는 施設保護가 주를 이루고 있음.

〈 表 4 〉 要保護兒童의 發生 및 保護 現況

연 도	계	발생유형별				보호내용별		
		기아	미혼모 아 동	미아	가출아	시설 보호	위탁 보호	입양
1990	5,721	1,844 (32.2)	2,369 (41.4)	360 (6.3)	1,148 (20.1)	3,734 (65.3)	1,134 (19.8)	853 (14.9)
1991	5,095	1,610 (31.6)	2,020 (39.6)	188 (3.7)	1,277 (25.1)	3,414 (67.0)	999 (19.6)	682 (13.4)
1992	5,020	1,481 (29.5)	1,813 (36.1)	241 (4.8)	1,485 (29.6)	3,122 (62.2)	1,212 (24.1)	686 (13.7)
1993	4,451	1,330 (29.9)	1,904 (42.8)	137 (3.1)	1,080 (24.2)	2,940 (66.1)	943 (21.2)	568 (19.3)

資料: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94.

2. 國內入養의 低調

가. 入養兒의 發生 原因

-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54년으로, 이 때의 入養은 주로 韓國戰爭의 과정에서 생겨난 戰爭孤兒와 混血兒에 대한 保護政策의 次元에서 이루어졌다.
 - 우리나라에 現代의 意味의 入養이 導入되고 난 후 初期에 이루어진 入養의 대부분은 棄兒를 對象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음.
 - 1958년부터 1960년까지 3년 동안에 國內 및 國外的 家庭으로 入養된 290명의 어린이들 중에서 棄兒가 차지하는 比率은 65.0%로, 未婚母의 子女(10.7%)나 缺損家庭의 子女(24.3%)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1961년부터 1970년까지의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入養 實績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國內 및 國外的 家庭으로 入養된 2,467명의 어린이 중에서 棄兒가 차지하는 比率은 60.8%, 未婚母의 子女가 차지하는 比率은 21.5%, 그리고 缺損家庭의 子女가 차지하는 比率은 17.8%임.

- < 表 5 > 는 1958년부터 1993年末 現在까지 國內 및 國外的 家庭으로 入養된 어린이들을 對象으로 入養對象 兒童이 된 要因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준다.
- 1970年代에 접어 들면서 全體 入養兒 중에서 未婚母의 子女가 차지하는 比率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971년부터 1980년까지 10年 동안에 入養된 어린이들 중에서 未婚母의 子女가 차지하는 比率은 42.0%에 이르고 있음.
 - 未婚母의 子女가 차지하는 比率은 점점 늘어나, 1981년부터 1985년까지 5年 동안에는 65.4%, 1986년에는 80.2%, 그리고 1993년에는 86.5%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入養對象 어린이들 중에서 未婚母의 子女가 차지하는 比率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까닭은 西歐社會의 性解放에 대한 進歩的인 潮流가 우리사회에도 擴散되어 가고 있고, 産業化 및 都市化 그리고 이와 관련된 生活樣式이 변화되면서 異性交際의 機會가 늘어 나고, 性態度에 대한 傳統的인 家族的, 社會的, 道德的 規制가 弱화되고 있기 때문임.

< 表 5 > 入養兒의 發生 要因別 分布

(단위: 명, %)

연 도	계	미혼모	기 아	결혼가정
1958~1960	2,700	290(10.7)	1,755(65.0)	655(24.3)
1961~1970	11,481	2,467(21.5)	6,975(60.8)	2,039(17.8)
1971~1980	63,551	26,702(42.0)	22,220(35.0)	14,629(23.0)
1981~1985	50,502	33,051(65.4)	8,748(17.3)	8,703(17.2)
1986	11,534	9,253(80.2)	866(7.5)	1,415(12.3)
1987	10,329	8,183(79.2)	698(6.8)	1,448(14.0)
1988	8,787	7,528(85.7)	450(5.1)	809(9.2)
1989	6,063	5,100(84.1)	399(6.6)	564(9.3)
1990	4,609	3,734(81.0)	323(7.0)	552(12.0)
1991	3,438	2,758(80.2)	301(8.8)	379(11.0)
1992	3,235	2,717(84.0)	243(7.5)	275(8.5)
1993	3,444	2,980(86.5)	250(7.3)	214(6.2)
계	179,673	104,763(58.3)	43,228(24.1)	31,682(17.6)

資料: 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 내부자료, 1994.

나. 國內外 入養 實態

- 入養政策의 방향에 따라 國內入養의 比率은 懸隔한 差異를 보인다.
 - 移民 擴大 및 民間 外交 次元에서의 國外入養 全面 開放의 方向으로 政策을 펼친 1987年의 경우엔 國內入養의 比率이 23.1%에 지나지 않았으나,
 - 國內入養 浮揚策을 實施한 1981年의 경우엔 全體 入養의 41.4%가 國內 入養임.
- 1990年 以後 國內入養兒의 比率은 35%를 넘고 있으나, 國內入養兒의 數는 줄어 들고 있다.

〈 表 6 〉 入養 實績의 推移

(단위: 명, %)

연 도	계	국내입양	국외입양	국내입양 비율(%)
1958~1960	2,700	168	2,532	6.2
1961~1970	11,481	4,206	7,275	36.6
1971~1980	63,551	15,304	48,247	24.1
1981	7,895	3,267	4,628	41.4
1982	9,732	3,298	6,434	33.9
1983	10,259	3,004	7,255	29.3
1984	10,924	3,000	7,924	27.5
1985	11,692	2,855	8,837	24.4
1986	11,534	2,854	8,680	24.7
1987	10,329	2,382	7,947	23.1
1988	8,787	2,324	6,463	26.4
1989	6,063	1,872	4,191	30.9
1990	4,609	1,647	2,962	35.7
1991	3,438	1,241	2,197	36.1
1992	3,235	1,190	2,045	36.8
1993	3,444	1,154	2,290	33.5
계	179,673	49,766	129,907	27.7

資料: 1) 김근조,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인식과 태도조사 연구-국내입양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논문집』, 제12호, 국립사회복지연수원, 1989, pp. 238.
 2) 보사부, 아동복지과 내부자료, 1994.

- 1993년에 이루어진 國外入養은 주로 美國(78.9%), 덴마크(6.1%) 등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 表 7 〉 國外入養의 對象 國家別 分布, 1993年
(단위: 명, %)

나 라	입양아수비율(%)
미 국	1,80778.9
덴 마 크	1396.1
노르웨이	1044.5
프 랑 스	853.7
호 주	693.0
스 웨 덴	602.6
룩셈부룩	210.9
네덜란드	40.2
벨 지 움	10.1
계	2,290100.0

資料: 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 내부자료, 1994.

- 특히 美國의 國外入養에서 韓國의 어린이가 차지하는 比率은 27.3%(1992年)로 單一 國家 중에서 가장 높은 水準이다.

〈 表 8 〉 美國의 國際入養 現況: 入養兒童의 出身地域別
(단위: 명, %)

출신지역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10,097	9,120	7,948	7,093	9,008	6,536
한국	5,910	4,942	3,552	2,620	1,817	1,787
기타 아시아	1,704	1,542	1,560	1,195	1,377	1,245
유럽	122	99	120	262	2,762	145
아프리카	22	28	36	52	41	63
오세아니아	3	15	13	10	16	13
북미	973	844	910	959	1,047	1,136
중미	654	568	595	683	770	892
남미	1,363	1,650	1,757	1,995	1,949	1,418

資料: 홀트아동복지회, 내부자료, 1993.

다. 國內入養이 低調한 原因

- 國內入養에 대한 社會的 雰圍氣가 造成되지 못했다.
 - 國內入養의 대부분(81.0%)이 入養 事實을 비밀로 하는 반면에, 國外入養의 경우 98.3%가 入養 事實을 公開하고 있음.
 - 따라서 政府가 國內入養 活性化를 위해 樹立하고 있는 國內入養 家庭에 대한 支援 政策은 큰 效果를 期待하기 어려운 狀態임.
 - 특히 障礙兒에 대한 國內入養의 忌避로 國內入養의 活性化는 더욱 어려움.

〈 表 9 〉 入養 事實의 公開 豫定 與否 (단위: %)

	계	국내입양	국외입양
계	100.0	100.0	100.0
비공개	26.1	81.0	0.5
공개	72.7	17.9	98.3
무응답	1.1	1.0	1.2

資料: 정기원·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表 10 〉 入養兒의 障礙 與否 (단위: %)

	계	국내입양	국외입양
계	100.0	100.0	100.0
정상아	76.1	93.3	68.1
장애아	23.9	6.7	31.9

資料: 정기원·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특히 國內入養 手數料(50-100만원)가 入養對象 兒童의 養育費(18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入養機關은 財政의 不足分을 國外入養에 따른 後援金 또는 贊助金を 통해서 補充하려는 傾向이 있다.
 - 國內入養機關의 경우 機關當 政府의 運營費 支援이 年間 500만원의 水準이며,

- 國外入養機關의 경우 運營費를 入養手數料에 依存하는 形편임.

〈 表 11 〉 國內入養 兒童의 養育費 算出: 1個月分

(단위: 천원)

	신생아	신생+이유식	인건비 국고지원
계	1,800	1,820	1,100
직접비	873	893	893
분만비	300 ¹⁾	300	300
양육비	462 ²⁾	482	482
사진비	6	6	6
의료비	105	105	105
간접비	927	927	227
홍보비	10	10	10
수속비	20	20	20
인건비	700 ³⁾	700	0
관리비	173	173	173
기 타	24	24	24

註: 1) 미혼모의 경우 의료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2) 15,400원/일 × 30일 = 462,000원의 근거에서 산출되며, 이유식의 비용은 20,000원으로 계산함.

3) 상담소 1개소당 입양 아동수를 100명으로 가정하고, 상담원 1인당 월 3명의 입양을 알선하는 것으로 산출함.

資料: 'ㅎ' 입양기관 내부자료, 1994.

3. 事後管理의 不在

- 入養된 兒童에 대한 事後管理는 入養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重要한 過程임에도 불구하고, 入養特例法의 施行令에서 兒童相談員의 業務를 規定하면서 '事後指導'란 말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 國內入養의 대부분이 秘密로 이루어지고, 入養特例法에 의한 入養兒가 入養家庭의 親子女로 入籍되기 때문에 入養兒의 事後管理에 관한 現況이 전혀 把握되지 않음.

- 國外入養의 경우엔 外國의 協約機關에 事後管理를 依存하고 있는 실정임.
- 國外入養 兒童에 대한 母國訪問事業을 推進하고 있으나, 1982년부터 1993년까지 母國訪問事業에 參與한 入養兒童은 4,215명에 지나지 않음.

〈 表 12 〉 入養兒의 戶籍 登載 狀態 (단위: %)

	계	국내입양	국외입양
계	100.1	99.9	100.0
친자로 등재	31.4	97.9	0.2
양자로 등재	67.2	0.5	98.4
무응답	1.5	1.5	1.4

資料: 정기원·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表 13 〉 入養機關別 母國訪問事業 推進 現況: 1982年~1993年 (단위: 명)

입양기관	계	모국방문 인원		대 상 국 가
		아 동	양부모	
계	11,362	4,215	7,147	
홀 트	7,278	3,160	4,118	미국 및 유럽지역 6개국
동 방	1,339	426	913	미국, 호주
대 한	2,066	296	1,170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한 국	679	333	346	미국 및 북유럽지역 4개국

資料: 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 내부자료, 1994.

Ⅲ. 國內入養 活性化를 위한 長短期 對策

1. 兒童福祉 서비스로서의 入養

가. 入養의 機能

- 現代的인 意味의 入養制度는 다음의 機能을 갖는다.
 - 兒童에게 入養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永久한 家庭과 持續的이며 健全한 家族關係를 갖게 함.
 - 不妊夫婦가 父母가 될 수 있게 하는 手段이 됨.
 - 家門의 이름을 持續시키는 手段이 됨.
 - 遺産을 물려주는 手段이 됨.
 - 子女를 養育 및 保護할 能力이 없거나 子女를 원하지 않는 父母가 父母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手段이 됨.
 - 子女가 있는 사람이 兒童을 더 養育하려는 欲求와 能力이 있을 때, 이를 滿足시키는 手段이 됨.(Kadushin, 1980: 465~466; 복지연구회, 1984: 49에서 재인용)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入養이 養父母의 個人的 欲求를 滿足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 入養의 種類

- 入養은 이루어지는 形態에 따라 다음과 같이 區分된다.
 - 獨立的 入養(Independent Adoption): 親父母가 직접 入養家庭을 選定하여 어린이를 그 家庭에 맡기고 父母로서의 親權을 拋棄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養子制度和 入養斡旋機關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入養이 여기에 해당됨.
 - 의붓아버이 入養(Stepparent Adoption): 配偶者의 子息을 入養하는 경우로서, 親父母의 家庭에서 成長하던 어린이가 새로운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

서 戶籍上의 內容이 바뀌지만 여전히 親父母 中の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살기 때문에 兒童福祉서비스의 한 形態로 定義되는 入養과는 거리가 있음.

- 國家間 入養(Intercountry Adoption): 外國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入養하는 경우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外國의 家庭에 入養시키고 있을 뿐 外國의 어린이를 우리나라 家庭에서 入養하는 경우는 없음.
- 機關 入養(Agency Adoption): 入養斡旋機關에 의하여 入養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入養特例法에서 機關入養의 節次에 관한 內容을 具體的으로 提示하고 있음.

2. 入養事業 改善의 基本方向

가. 兒童을 위한 入養政策의 樹立

- 入養은 兒童의 健全 育成을 위한 代理的 保護인 바, 兒童의 成長에 미치는 影響을 바탕으로 國內入養과 國外入養의 評價가 이루어져야 하며, 施設保護 보다는 家庭保護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兒童福祉의 原則에 充實해야 한다.

나. 現行의 國外入養 禁止 政策에 대한 全面的 檢討

- 現在의 社會的 與件(血緣中心의 家族制度, 障礙兒童에 대한 入養 忌避 등)을 고려할 때 해마다 2,000名 내외로 發生하는 國外入養 兒童을 短期間에 國內入養으로 全面 轉換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 특히 國外入養의 31.9%를 차지하는 障礙兒童에 대한 國內入養은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됨.
 - 國外入養의 禁止에 따른 社會的 影響의 評價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國外入養을 禁止할 경우에 豫想되는 兒童福祉의 質 低下 및 國家 威信의 損傷에 대한 代案이 없음.
 - 따라서 現行의 國外入養 禁止政策에 대한 再檢討가 要求됨.

다. 問題의 原因에 對應하는 長短期 對策의 樹立

- 現行의 問題點과 그 原因에 對應할 수 있는 長短期 對策의 樹立이 필요하다.

〈 表 14 〉 國內入養 活性化를 위한 長短期 對策의 方向

문 제 점	원 인	대책의 방향	
		단 기	중 장 기
입양대상아동의 발생	- 미혼모의 발생	- 청소년 성교육 강화 - 성상담실 운영 활성화 - 부녀 및 아동상담소의 운영 내실화	- 성가치관 확립 - 미혼모 양육비 지원
	- 장애아의 발생	- 미혼모에 대한 무료 산전관리 실시 - 미혼모의 분만에 대한 의료보호 제공 - 미혼모의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의 무료 실시	- 장애아 발생 억제 대책 수립 - 장애아 보호시설 확충
	- 가족의 해체	- 가족단위 복지서비스 - 자녀양육비 회수제도	- 건전 가족가치관 확립
국내입양의 저조	- 혈연중심 가치관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불법입양의 단속 - 위탁보호제도 확대	- 공개입양 유도
	- 정부 지원 미흡	- 입양수수료의 현실화 - 양육비와 입양수수료의 차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연간 소요액: 30억원) - 입양기관 정비 - 국외입양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	- 소집단보호제도 도입
사후관리의 부재	- 법적 근거 미비	- 법의 개정을 통해 입양 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의무 부과 - 입양가정에 대한 상담 서비스 내실화	- 공개입양 유도
	- 프로그램 부재	- 사후관리 수요 파악 - 국외입양 사후관리의 프로그램 개발 - 모국방문 활성화	- 민간외교에 활용

3. 入養特例法の 改正¹⁾

가. 入養特例法 改正 推進의 背景

- 政府는 入養事業 改善 計劃을 發表하면서(1989年), 우리나라가 國際社會에서 겪고 있는 ‘孤兒 輸出國’의 不名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1996년부터 國外入養을 中斷기로 하였다.
- 그러나, 國外入養을 全面的으로 禁止하겠다는 政府의 立場은 다음의 세가지 理由로 再考될 必要가 있다.
 - 1993년에 入養된 어린이는 모두 3,444名(國內入養 1,154名, 國外入養 2,290名)으로, 해마다 發生되는 3,500餘名の 入養對象 兒童에게 國內의 入養家庭을 찾아 주는 것이 現實적으로 어려운 狀態임.
 - 國內의 入養家庭을 찾지 못한 兒童은 國外入養의 禁止政策에 따라 國內의 保護施設에 收容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家庭保護 優先의 原則에 어긋나는 政策이 됨.
 - 특별한 保護나 治療를 要하는 兒童(예, 障碍兒童 등)을 國外入養 禁止의 對象에서 除外시키고 있는데, 이는 國家의 體面을 더욱 損傷시키고 있음.
- 國內入養 活性化를 위한 政府의 모든 努力에도 불구하고, 우리 社會의 文化的 與件이 成熟되지 않아 國內의 家庭으로 入養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國內의 施設保護보다는 國外入養이 우선될 수 있는 方案이 模索되어야 하며, 政府는 ‘언제부터 國外入養을 禁止하겠다’는 식의 無責任한 發表보다는 國內入養을 活性化할 수 있는 具體적인 政策을 만들어야 한다.
- 國外入養의 法的 根據를 마련하기 위하여 制定된 現行의 入養特例法은 國內入養 活性化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現行의 法을 改正하여 國內入養 中心의 法體系를 構築하는 것은 入養과 관련된 政府의 政策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政策課題가 된다.

1) 입양특례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은 1994년 6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入養特例法 改正에 관한 政策討論會’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고친 것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시안은 <부록 1>로 실었으며, 1995년 1월 5일 공포된 ‘入養促進 및 節次에 관한 特例法’은 <부록 2>로 실었음.

나. 現行 入養特例法の 問題點

- 韓國戰爭 중에 생겨난 戰爭孤兒와 混血兒를 國外の 家庭으로 入養할 수 있는 法的 根據를 마련하기 위하여 政府는 1961년에 ‘孤兒入養特例法’을 制定하였고, 1976년에는 國外入養의 節次를 더욱 簡素化하기 위하여 ‘孤兒入養特例法’을 폐지하고 現行의 ‘入養特例法’을 制定하였다.
- 그러나 現行의 入養特例法은 國外入養 中心의 特例法으로서, 다음의 理由로 國內入養 活性化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民法에 대한 特例 條項이 未備
 - 國外入養 中心의 特例法
 - 現行 入養業務의 法的 根據가 未備
- 現行의 入養特例法을 改正해야 한다는 要求는 各界로부터 끊임없이 提起되고 있으며, 入養機關側은 다음의 事項을 要求하고 있다.
 - 機關入養制度의 導入과 不法 個人入養의 規制
 - 國內入養의 節次 規定
 - 入養取消 請求의 訴 提起 期限 短縮
 - 入養兒에 대한 事後管理의 規定 補完
- 學界 및 法曹界에서는 다음의 事項을 要求하여 왔다.
 - 養親될 資格에 대한 實質的 審査制度 導入
 - 家庭法院의 許可에 의한 入養制度 導入
 - 親生子 出生申告의 法的 根據 補完

다. 入養特例法 改正의 基本 方向

- 現行 入養特例法은 部分的 改正보다는 全面 改正이 바람직하다.
 - 國內入養 中心의 法體系를 確立하고,
 - 入養節次를 體系化하여,
 - 國內入養의 活性化를 꾀함.

- 現行의 入養特例法에 나타나고 있는 國內入養 沮害 要素를 除去해야 한다.
 - 親生子 出生申告의 法的 根據를 마련하고,
 - 入養機關의 義務를 具體的으로 規定하며,
 - 入養에 대한 國家 및 社會의 義務를 具體的으로 明示함.
- 따라서, 改正案의 作成에 있어서는 아래의 原則들이 지켜져야 한다.
 - 1) 兒童福祉 最優先 原則을 바탕으로 함.
 - 家庭保護 優先의 必要性을 明示하여 要保護兒童에 대한 保護를 國內入養 > 國外入養 > 施設保護의 順序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 國內入養 提高를 위한 國家 및 社會의 義務를 明示하고,
 - 入養이 兒童福祉 增進을 위한 社會서비스의 한 分野임을 밝힘.
 - 2) 民法에 의한 傳統的 養子制度和 入養特例法에 의한 養子制度를 區分함.
 - 入養特例法에 의한 養子の 資格과 養親될 資格을 具體的으로 提示하고,
 - 入養特例法에 의한 入養의 경우 親生子 出生申告의 法的 根據를 마련하며,
 - 入養特例法에 의한 入養에서는 個人에 의한 秘密入養을 禁止함.
 - 3) 入養에 대한 國家 및 社會의 義務를 具體的으로 明示함.
 - 障礙兒童 등의 入養에 대해 政府가 養育補助金を 支援하도록 하고,
 - 入養機關에 대한 政府의 財政支援 方案도 具體的으로 明示함.
 - 4) 入養機關에 대하여 政府가 財政支援을 하는 대신에, 入養機關의 義務를 具體的으로 明示하고, 이의 履行에 대한 政府의 監督權을 強化하도록 함.

라. 入養特例法 改正의 主要 內容

- 法의 構成을 再編成
 - 現行: 18條
 - 改正: 6章 40條

- 第1章 總則
- 第2章 入養의 要件
- 第3章 入養의 成立과 效力
- 第4章 入養機關
- 第5章 福祉施策의 講究
- 第6章 補則

- 家庭保護 優先의 原則을 明示함.

新設

- 家庭保護 優先의 原則을 明示하고, 國內入養 促進을 위한 國家의 責任을 明示함.

期待效果

- 要保護兒童에 대한 社會福祉서비스를 國內入養 > 國外入養 > 施設保護의 順序로 규정(國外入養을 禁止할 경우, 國內入養 > 施設保護의 順序가 됨.)

- 國內入養 節次를 合理化함

現行

- 戶籍法에 따라 養子로 申告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 隣友保證을 이용하여 不法 또는 虛僞로 出生申告하고 있음.
- 따라서 破養이 될 경우 入養兒童은 無籍者가 되며,
- 不法의 出生申告라는 犯法認識은 國內入養의 活性化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改正

- 戶籍法에 따라 養子 또는 親生子로 申告할 수 있도록 함.
- 美國 및 유럽의 대부분 國家가 完全入養制度를 導入하여 親生子로 出生申告 할 수 있는 法的 根據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 日本의 경우 1987년에 民法을 改正하여 特別養子制度를 導入하고, 親生子 出生申告의 法的 根據를 마련하고 있음.

期待效果

- 現行의 隣友保證을 이용한 不法 또는 虛僞 出生申告를 根絶하고,
- 親生子 出生申告의 法的 根據가 마련됨으로써 破養된 入養兒童의 原籍 復歸가 可能하며,

- 親子로 入籍하고자 하는 國民的 情緒에 부합되어 國內入養을 活性化 할 수 있는 方案이 됨.

- 機關入養만을 認定

現行

- 國內入養은 兒童福祉法에서, 國外入養은 入養特例法에서 入養斡旋機關을 통해서 入養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醫療機關(産婦人科, 助産所 등)을 통한 不法的 個人入養 또는 兒童의 ‘秘密去來’가 常存하고 있는 실정임.

改正

- 入養特例法에 의한 入養은 반드시 入養機關을 經由하도록 明示함.

期待效果

- 兒童의 ‘秘密去來’를 根絶하고,
- 入養兒童에 대한 事後管理가 可能하도록 함.

- 入養兒童 및 入養家庭에 대한 支援制度를 導入

新設

- 養育補助金(養育費, 醫療費, 教育費, 其他 費用)의 支給
- 入養家庭에 대해 分讓住宅의 一定 比率 優先 配定
- 入養家庭에 대한 專門 社會事業서비스 提供

期待效果

- 國內入養 活性化의 與件 造成

- 入養機關에 대한 財政支援

現行

- 現在의 入養機關들은 財政的으로 脆弱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入養機關은 寄附金을 確保하기 위하여 國外入養에 置重하는 경향이 있음.

改正

- 入養機關의 設置 및 運營에 필요한 費用을 政府가 補助하도록 함.

期待效果

- 入養機關의 專門性을 확보하여 國內入養의 活性化에 寄與

- 入養機關의 義務를 具體的으로 規定

現行

- 入養과 관련된 業務에 대한 秘密維持만을 入養機關의 義務에 포함하고 있음.

改正

- 秘密維持의 義務외에, 養育에 관한 教育, 事後管理, 그리고 母國訪問事業의 推進 등을 入養機關의 義務에 追加함.

期待效果

- 入養機關의 專門性을 통해 入養이 發展될 수 있는 與件을 造成

- 轉園의 法的 根據 마련

現行

- 障礙 등으로 入養이 곤란한 兒童에 대한 轉園의 規定이 없는 탓으로, 施設에 保護·依賴할 수 있는 制度的 장치 없음.

改正

- 入養이 곤란한 兒童에게 필요한 保護措置를 講究

期待效果

- 管轄 區域의 範圍를 넘어서도 保護依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入養이 곤란한 要保護兒童에게 적절한 社會서비스 提供

參 考 文 獻

- 국회사무처, 『대한민국 법률안 연혁집』, 1992.
- 권정희, 「양자법 개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이대 박사학위논문, 1993.
- 김근조,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인식과 태도조사 연구-국내입양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논문집』 제12호, 국립사회복지연수원, 1989, pp. 231~291.
- 김만식, 「입양을 위한 의식구조 변화와 입양관계법 소고」, 『아동복지』 통권34호, 홀트아동복지회, 1981, pp. 19~28.
- 김주수, 「입양에 관한 법 고찰」, 『아동복지』 통권 34호, 홀트아동복지회, 1981, pp. 13~16.
- _____, 「양자제도의 비교법적 고찰(상)」, 『사법행정』 5월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85, pp. 57~65.
- _____,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의 필요성」, 『한국사회복지학회』 제2집, 1987, pp. 132~143.
- _____, 「일본특별양자제도와 그 운영실태」, 『연세행정논총』 제16집, 1991, pp. 133~159.
- 김창희, 「양자제도에 관한 연구-입양의 성립과 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85.
- 김학주, 「국내입양 요소의 특성과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통권 34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 pp. 131~149.
-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 내부자료, 1989.
- _____, 『보건사회백서』, 1991.
- _____, 『아동복지시설일람표』, 1994.
- _____, 『보건사회통계연보』, 1994.
- _____, 아동복지과 내부자료, 1994.
- 배태순, 「국내입양문제와 관련한 입양법 개정제안」,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한국아동복지학회, 1990, pp. 1~22.
- _____, 「입양서비스와 가족체계이론」,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16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90, pp. 74~101.

- _____, 『해외입양중지와 그 이후의 과제-국내입양발전을 위한 가족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93 한국아동복지학회 제4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아동 복지정책의 과제』, 1993, pp. 27~43.
- 이 봉, 『양자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76.
- 이지숙, 『아동과 입양』, 『아산』 제59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3, pp. 20~25.
- 장인협·오정수,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 전익준, 『해외입양의 구성요소와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84.
- 정기원·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조상원, 『법전』, 현암사, 1993.
-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199년 11월 27일자.
- 탁연택, 『새로운 시각에서 본 입양』, 『사회복지학회지』 제8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86, pp. 209~232.
- 홀트아동복지회, 내부자료, 1993.
- 一也宏·英浩·野尾野·星格람, 『六法全書Ⅱ: 民法 第5款 特別養子』, 有斐閣, 1990.

附 錄

<附錄 1>

入養特例法 改正試案*

* 1994년 6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入養特例法 改正에 관한 政策討論會」에서 필자가 제안한 개정시안임.

개 정 (안)	현 행 법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 (목적) 이 법은 <u>요보호</u>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u>복지증진</u>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법은 <u>보호시설</u>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u>복지증진</u>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자구수정) - 입양을 아동복지서비스로 규정함</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요보호아동</u>”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을 말한다.</p> <p>2.. “<u>입양아동</u>”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p> <p>3. “<u>입양가정</u>”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양자를 둔 가정을 말한다.</p> <p>4. “<u>입양기관</u>”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지정되어 입양알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p>5. “<u>입양기관종사자</u>”라 함은 입양기관에 종사하며 입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신설) - 법의 해석을 돕기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p>
<p>제3조 (책임)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의 건전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p>		<p>(신설) - 가정보호 우선의 원칙을 명시함 - 국내입양 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p>

개 정 (안)	현 행 법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입양의 요건</p> <p>제4조 (양자될 자격)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관할 서울특별시장, <u>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아동복지법에 의한 <u>아동복지시설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u>에 보호의뢰한 자 2. 부모가 입양을 동의(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하거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u>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u>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子)로서 <u>시·도지사가</u>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자로서 <u>시·도지사가</u>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에는 <u>호주를 포함한다</u>.</p>	<p>제2조 (양자될 자격)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u>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u>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관할 서울특별시장, <u>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의뢰한 자 2. 부모가 입양을 동의(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하거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子)로서 <u>도지사가</u>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자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에는 <u>호주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를 포함한다</u>.</p>	<p>(부분수정) - 입양대상아동의 범위를 보호시설 및 입양기관의 보호의뢰 아동으로 확대함</p> <p>(자구수정)</p> <p>(자구수정) -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아동(미혼모 아동)의 입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p> <p>(자구수정)</p> <p>(자구수정)</p> <p>(자구수정) - 민법의 개정(1990년)에 따라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의 제외</p>

개 정 (안)	현 행 법	비 고
<p>제5조 (양친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p> <p>1. 양친될 자는 배우자가 있을 것</p> <p>2. 양친될 자의 일방이 25세 이상일 것</p> <p>3. 양친될 자의 일방과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20세 이상 45세 미만일 것</p> <p>4.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p>	<p>제3조 (양친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p> <p>1. 양친이 될 자는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p> <p>2.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p>	<p>(부분수정)</p> <p>(삭제)</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5. 양자를 천업·고역 기타 인 권유린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p> <p>6.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p> <p>7. 부부간의 사이가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할 것</p> <p>8.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양친될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p>	<p>3. 양자를 천업·고역 기타 인 권유린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p> <p>4.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p>	<p>(신설)</p> <p>- 입양가정의 가정상황에 대한 요건을 명시</p> <p>(신설)</p> <p>- 외국인의 경우를 별도로 규정</p>
<p>제6조 (부부의 공동입양)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p>		<p>(신설)</p> <p>- 부부의 공동입양을 규정함</p>

개 정 (안)	현 행 법	비 고
<p>제7조 (기관입양) 이 법에 의하여 양친될 자가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입양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p>		<p>(신설) - 입양기관을 경유한 입양만을 인정</p>
<p>제8조 (입양의 동의) ①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p> <p>②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 외에 당해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p>	<p>제4조 (입양의 동의) ①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p> <p>②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 외에 당해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p>	<p>(자구수정)</p>
<p>제3장 입양의 성립과 효력</p> <p>제9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법에 의한 입양은 양친될 자가 입양기관의 장과 함께 양친될 자의 본적지에 서류를 갖추어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양자될 자의 친생자 또는</p>	<p>제6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 양친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있어서의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p>	<p>(수정) - 친생자 출생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신고의 장소를 양친될 자의 본적지로만 한정함</p>

개 정 (안)	현 행 법	비 고
<p><u>입양자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u>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자로 될 자가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친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3.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u>입양기관이 발행한 입양확인서</u> 5. <u>양자될 자의 호적등본</u> 	<p>② 제1항의 신고는 <u>양친이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자로 될 자가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양친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p>(자구수정)</p> <p>(신설) - 입양확인서를 추가함 - 호적등본을 추가함</p>
<p>제10조 (친생자 출생신고) ① 제9조에 의하여 양자될 자를 양친될 자의 친생자로 신고할 경우 새로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2. 자의 <u>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분</u> 3. 출생의 생년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 및 본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 새로운 출생신고서 작성의 근거법 조항 <p>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되는 출생신고서에는 양친될 부모의 성명 및 본을 부모의 성명 및 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출생신고서에는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첨부되는 서류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p>		<p>(신설) - 친생자 출생신고의 절차를 규정</p>

개 정 (안)	현 행 법	비 고
<p>제11조 (양자의 성과 본)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p>	<p>제7조 (양자의 성과 본)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과양 또는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가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삭제) - 과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p>
<p>제12조 (입양의 효력)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양자될 자를 양친될 자의 친생자로 신고할 경우 양자될 자와 그 친부모 및 혈족과의 친족관계는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종료한다.</p>		<p>(신설) - 양친의 혼인중의 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가 있음을 규정 - 양자와 친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이 법에 의한 친생자 신고에 의하여 종료함을 명시함</p>
<p>제13조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6월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 양친, 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p>	<p>제13조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 양친, 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p>	<p>(수정) - 제한기간의 단축</p>
<p>제14조 (알 권리의 인정) ①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자가 성인이 되면 그는 그의 출신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p>		<p>(신설) - 입양아동의 출신에 관하여 알 권리를 인정함</p>

개 정 (안)	현 행 법	비 고
<p>②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자가 성인이 되어 그의 출신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필요한 자료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15조 (과양의 청구) ① 이 법에 의하여 성립된 입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친자의 일방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가정법원에 과양을 청구할 수 있다.</p> <p>1.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한 때</p> <p>2. 기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양 청구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p> <p>1. 양자이었던 자가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p> <p>2. 입양으로 인하여 말소된 양자의 원적 사본</p> <p>3. 입양기관이 발행한 입양 사실확인서</p> <p>4. 입양기관의 과양상담보고서</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양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의 제한 - 과양 청구시의 첨부 서류를 규정함
<p>제16조 (과양)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분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 또는 과양이 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분을 따른다.</p> <p>②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종료된 친부모 및 혈족과의 친족 관계는 과양의 선고를 받은 때부터 복귀된다.</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양 후 본래의 성과 분으로 복귀되는 것을 규정함 - 과양 후 종료된 친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복귀됨을 규정함

개 정 (안)	현 형 법	비 고
<p>③ 가정법원에 의해 파양의 선고를 받은 입양아동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의 장 및 기타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보호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p>		<p>- 파양된 아동의 보호조치를 규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입양기관</p> <p>제17조 (입양기관)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로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시·도지사는 국내입양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입양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입양기관의 허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외국인인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p>	<p>제10조 (입양알선기관) ① 입양알선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입양알선기관의 허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외국인인 입양알선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p>	<p>(입양기관운영의 허가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전문기관(국내 또는 국외입양 알선): 보사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입양지정기관(국내입양 알선): 시·도지사 <p>- 시·도에서 국내입양 알선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p>
<p>⑤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대상국이나 당해국의 공인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④ 입양알선기관의 장이 입양대상국이나 당해국의 공인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8조 (입양기관 종사자) ① 입양기관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입양기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기관 종사자의 채용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

개 정 (안)	현 행 법	비 고
<p>제19조 (입양기관의 의무) ① <u>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서 그 양친될 자에 대하여 제5조 각호의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u></p> <p>② <u>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u></p> <p>③ <u>입양기관의 장은 양친될 자에게 입양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④ <u>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 후 6월간 양친자의 상호 적응 상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입양 아동은 국적취득시까지로 한다.</u></p> <p>⑤ <u>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한 모국방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u></p>	<p>제11조 (양친의 가정조사와 비밀유지) ① <u>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서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3조 각호의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u></p> <p>② <u>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을 위하여 입양될 자의 성명·사진 또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없다.</u></p> <p>③ <u>입양알선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u></p>	<p>(자구수정)</p> <p>(삭제)</p> <p>(자구수정)</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에 관한 교육의 의무를 규정 - 사후관리의 의무를 규정화 <p>- 모국방문사업의 추진을 의무화</p>
<p>제20조 (입양기관의 후견직무) ① <u>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로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직무를 행한다.</u></p> <p>② <u>입양기관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파양청구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후견인의 직무를 재개한다.</u></p>	<p>제12조 (입양알선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u>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로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u></p>	<p>(자구수정)</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양 청구시 입양기관의 장이 후견직무를 재개하도록 규정함
<p>제21조 (무적아동의 취적) <u>입양기관의 장은 양자될 자를 호적이 없는 상태에서 인수한 때</u></p>	<p>제13조 (무적아동의 취적) <u>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알선기</u></p>	<p>(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적을 의무로 규정

개 정 (안)	현 행 법	비 고
<p>에는 그 자에 대한 취적 또는 일가창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관의 장은 그 양자로 될 자가 무적자인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취적 또는 일가창립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p>	
<p>제22조 (전원) ① 입양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자의 입양알선이 불가능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고된 아동이 관할내 또는 관할외의 보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신설)</p> <p>- 장애 등으로 입양이 곤란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p>
	<p>제8조 (국내에서의 국외입양)</p> <p>①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될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양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p> <p>1. 제6조 제2항 각호의 서류</p> <p>2. 양자로 될 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p> <p>② (1990. 12. 31 삭제)</p>	<p>(삭제)</p> <p>- 국외입양 절차를 일원화</p>
<p>제23조 (국외입양)</p>	<p>제9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p> <p>① 외국인이 국외에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입양알선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그 알선을 의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p>	<p>(수정 및 부분 삭제)</p> <p>- 제7조(기관입양)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함</p>

개 정 (안)	현 행 법	비 고
<p>① <u>외국인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할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p>1. 제9조 제2항 각호의 서류 2. 양자로 될자가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p> <p>② 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당해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u>입양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제적할 것을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u></p>	<p>알선업무를 행하는 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알선기관이어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알선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당해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u>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제적할 것을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u></p>	
<p><u>제24조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u></p>		<p>(신설) - 입양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p>
<p>제25조 (감독) 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입양기관에 대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서류의 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u></p>	<p>제14조 (감독) 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입양알선기관에 대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서류의 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u></p>	<p>(자구수정)</p>

개 정 (안)	현 행 법	비 고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허가의 취소 등)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u>입양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허가 및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u>	제15조 (허가의 취소 등) 보건사회부장관은 <u>입양알선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u>	(자구수정)
제27조 (청문) <u>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6조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방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신설) -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
제5장 복지시책의 강구 제28조 (발생 예방)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신설) -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함
제29조 (국내입양의 활성화)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의 다른 가정에서 건전 양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u>		(신설) - 국내입양 활성화에 대하여 정부가 노력을 하도록 규정함

개 정 (안)	현 행 법	비 고
<p>제30조 (전문 사회사업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 양육에 필요한 상담 등의 전문 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신설) - 입양가정에 대한 전문 사회사업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함</p>
<p>제31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입양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신설) - 입양가정에 대하여 주택지원을 하도록 함</p>
<p>제32조 (법제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신설) - 법제상의 조치와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p>
<p>제33조 (양육보조금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의 건전양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육비 2. 의료비 3. 교육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p>		<p>(신설) -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의 지급을 규정함</p>
<p>제34조 (양육보조금의 신청) ① 입양가정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제33조에 의한 양육보조금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양육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p>		<p>(신설) - 양육보조금의 신청 절차를 규정함</p>

개 정 (안)	현 행 법	비 고
<p>제35조 (비용의 부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한다.</p>		<p>(신설) - 양육보조금에 대한 비용의 부담</p>
<p>제36조 (비용의 수납)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p>		<p>(신설) - 입양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 칙</p> <p>제37조 (준용규정)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p>	<p>제16조 (준용기준)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p>	<p>(자구수정)</p>
<p>제38조 (권한의 위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신설) - 지방자치화에 대비하여 권한의 일부를 지방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p>
<p>제3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0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p>	<p>제18조 (벌칙) 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제9조의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자구수정 및 부분수정)</p>

개 정 (안)	현 행 법	비 고
<p>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p> <p>②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양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부칙 (이하 생략)</p>		

<附錄 2>

入養促進 및 節次에 관한 特例法*

* 1995년 1월 5일 공포된 개정안임.

入養促進 및 節次에 관한 特例法

第1章 總則

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라 함은 생활보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나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아동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第2章 入養의 要件

제4조(양자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2.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제5조(양친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4. 양친이 될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 ②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입양의 동의) 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호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있다.

第 3 章 入養節次

제7조(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법에 의한 입양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자로 될 자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양자)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는 본인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였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양친·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第 4 章 入養機關

제10조(입양기관)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 ④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설치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입양기관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입양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와 관련된 단체나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및 위탁절차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입양기관의 의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전에 아동교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자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 ⑥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방문사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장, 부모, 다른 지계존속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

제14조(무적아동의 추적)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호적이 없는 상태에

서 인수한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취적절차를 거쳐 일가창립을 할 수 있다.

제15조(입양알선이 곤란한 자 등의 보호) ①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뢰된 자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자
 2. 이 법에 의한 입양이 취소되거나 과양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자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외국인인 국내에서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인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될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양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2항 각호의 서류
2. 양자로 될 자가 제4조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7조(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그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이하 “해외이주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취소할 것을 관할 호적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자로 될 자가 미아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
 2.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제18조(감독) 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양기관에 대하여 그 입양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서류의 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용의 수납)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第5章 入養兒童 등에 대한 福祉施策

제21조(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복지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의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비 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운영비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 6 章 補 則

제24조(청문)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 7 章 罰 則

제27조(벌칙) 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 업무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 제2항 또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附 則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입양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繫屬 중인 입양인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입양알선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고아입양특례법 및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입양알선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입양기관으로 본다.